

남면체육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5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5. 6.

다. 상 정 일 자 : 2004. 5. 6.

(제1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재무과장 허길중

나. 제안사유

-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남면 체육시설 설치 부지를 확보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(단위 : m², 천원)

구분	토 지 소 재 지			지목	취득면적	재산가액 (공시지가)	비 고
	읍면	리	지 번				
취득	남	사평	110-1외1	답	3,200	24,192	

○ 취득사유

- 영산강,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수원 관리 지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 함임.
- 남면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주민체력증진 및 노령인구의 여가활동 장소 제공으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안영순)

- 본 안건은 주민체력증진과 노인들의 게이트볼 경기 등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체육시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남면 사평리 110-1외 1필지를 취득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.

4. 질의 답변 요지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“위안의결”

첨부 : 남면 체육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